

약관의 주요내용 요약

아래 내용은 이용약관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쉽게 풀어 설명한 것일 뿐이며, 회사 홈페이지 (<https://www.uplussave.com>)상의 이용약관이 적용기준이 되고 내용이 변경 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이용약관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의 성립

- 고객님은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이용계약을 작성하셔야 하며, 회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 서류를 이미 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서는 고객님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신청 위임부탁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비는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해지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지원금

- 회사는 의무사용 약정을 체결하는 등 회사가 공시하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고객님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출고가에서 깎아 (에누리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제공일 기준 요금 미납된 상태이거나, 기존 약정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등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홈페이지에 지원금 내용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3 계약의 변경

- 주소변경, 부가서비스 신청 (해지) 등은 방문 외에 고객센터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말기 변경, 명의변경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 의 경우에는 대리점 등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요청 업무별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양식은 회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이용안내 > 신청서류양식받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요금 미납, 약정내용 위반, 단말기 압류, 가압류 등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이 제한됩니다.

4.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6개월 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회사에 귀책사유(잘못)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요금의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감면을 시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조건과 증빙서류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 할인을 중복 적용 받는 경우 직전 요금감면 (요금할인)을 반영하고 난 후 요금을 기준으로 요금할인 (요금감면)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6. 이용정지

- 이용요금을 2회 미납한(77,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은 1회) 경우, 타인명의 이름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하여 가입한 경우, 스팸을 전송한 경우 등 약관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즉시 이용정지가 가능한 경우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의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타인 명의(이름), 예금계좌, 신용카드를 무단으로(허락받지 않고) 사용하여 가입한 경우
- ③ 대량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 등을 전송하여 통화,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다른 이용자가 수신을 원하지 않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 ⑤ 기타 약관에서 정한 경우

■ 사전 통보 후 이용정지 하는 경우

- ① 요금의 납부를 2회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단, 1회 미납액이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한 경우)에는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정지 7일전까지 통지 후 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일시정지

- 고객이 일정기간 서비스 정지를 원하는 경우 1년에 2회(1회 당 90일 이내)에 한하여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단말기분실 등의 사유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 제출필요)
- 일시정지 신청 후 90일이 지나면 고객님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회사는 일시정지 해제하고 정상요금으로 환원되고 요금을 정상부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요금청구서나 SMS방법 등으로 해제 전 7일전까지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 일시정지 중에도 월 4,400원(부가세 포함)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

8. 손해배상

- 회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때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후부터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발생이 누적으로(합산하여)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의 금액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금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부가사용료)x6의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하여 고객과 협의된 금액

예시)

※ 조건 가정

: 기본료 : 30,000원 / 부가서비스 3,000원 / 서비스 불가 시간 : 6시간 / 1달 30일 / 1일 24시간

- 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 계산
-> 30,000원 ÷ 30일 ÷ 24시간 x 6시간 = 약 250원
- ② 부가사용료
-> 3,000 ÷ 30일 ÷ 24시간 x 6시간 = 약 150원
- ③ 손해배상 금액
-> (① + ②) x 6 = 약 2,400원

9. 데이터요금

- 데이터통화료 : 무선 인터넷 접속시부터 종료시까지 이용한 데이터 전송량을 기준으로 과금되는 금액으로 종량제와 정액제에 따라 달리 부과됨

종량제 :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

정액제 : 일정금액 지급 시 일정량의 데이터 사용이 별도 과금되지 않는 방식 (예시 : 유심 최강가성비 (10GB/100분))

※ 정액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종량제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이용료 : 벨소리, 동영상, 게임 등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대가, 서비스 이용비로서, 건별(종량제) 또는 월정액(일부 정액제)단위로 부과됨

10. 통화내역열람

-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국제전화 통화내역 포함)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합니다. 국제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매월 요금청구시 제공합니다.(단, KT 국제전화 통화내역 제외)

- 회사는 통화내역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SMS인증(문자메세지로 인증번호 전송)을 실시합니다.

11. 고객의 의무

고객은 요금을 지정일까지 납입하고,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12. 해지(일반, 직권해지)

- 고객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을 해지신청 당일에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요금 미납, 타인명의 도용, 스팸메시지 발송 등 법령과 약관을 위반한 경우 5일전까지 고객에게 사유 등을 알리고 서비스를 직권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스팸발송 등에 의한 경우는 먼저 해지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3. 지원금반환금 및 정산금 (베이직플랜)

-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이용계약 해지(요금 미납, 단말기 분실 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포함), 명의변경(양수인이 의무약정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약정철회를 하거나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로 기변하는 경우 고객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지원금 반환금 산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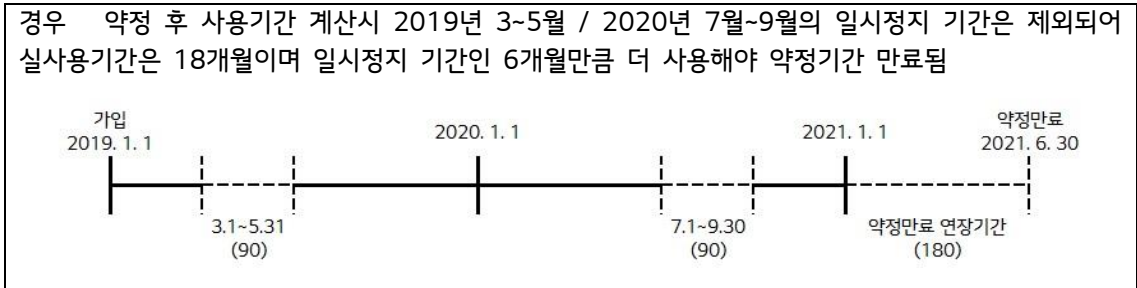
$$= \text{제공된 지원금(지원금 정산반영 후)} \times \{(\text{약정기간(일)} - \text{약정 후 사용기간(일)}) \div \text{약정기간 (일)}\}$$

② 지원금반환금은 약정 해지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

- ③ 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 지정 단말기,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시)

고객이 2019년 1월에 24개월 약정 가입 후 3월부터 5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일시정지 할



- ④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인이 지원금반환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지원금 반환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지원금반환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 ⑤ 지원금 받은 후 18개월 이후에(약정기간 만료되지 않은 상태) 24개월 정책기변으로 재약정 할 수 있으며 이때 약정기간은 기존 약정 잔여 약정기간과 재약정 기간이 합산됩니다. 합산된 약정기간 내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 시 기존 지원금반환금까지 합산하여 지원금 반환금이 청구됩니다(단, 연속 2회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금제의 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 받을 당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약정 요금제 변경) 고객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으로 지원금에 대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정산금 산정식(약정요금제 변경시)

$$(\text{변경 후 요금제 기준 지원금} - \text{변경 전 요금제 기준 지원금}) \times \{(\text{약정기간 (일)} - \text{약정 후 사용기간 (일)}) \div \text{약정기간(일)}\}$$
 - ② 변경 전/후의 지원금 기준은 지원금 받을 당시의 지원금 정책 기준에 따릅니다. 단, 지원금 받은 당시 없었던 신규 출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요금제 지원금을 '변경전 요금제기준 지원금 X (변경 후 요금제 월정액 / 변경전 요금제 월정액)'으로 산정합니다(1원 미만 절사)
 - ③ 정산금은 해당 사유 발생 시점에 청구됩니다
 - ④ 약정 후 사용기간은 실제 약정한 요금제, 지정 단말기, 가입을 유지하여 사용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고객이 대리점(판매점)이 판매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회사는 대리점(판매점)으로부터 단말기 매매 및 의무사용 약정을 인수하고 사유발생시 지원금반환금(정산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지원금반환금 면제

-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 품질 불량외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
 - ①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할 경우 : 지원금반환금 면제
 - ② 반납한 단말기가 성능은 정상이나 외형이 손상된 경우 : 지원금반환금 30%이내에서 감경
 - ③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 지원금반환금 감면없음
- 고객의 사망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 지원금반환금 면제

15. 번호이동

- 선불이동전화 가입고객, 이용요금 미납고객,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가입/번호이동/명의변경 고객 등의 경우는 번호이동이 제한됩니다.
-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고객의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 통화품질불량의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철회시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회사는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반료환, 기본료의 50% 감면을 적용합니다.